

#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보칙에 있던 관련 조항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의 징수·면제·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(안 제7조제3항)
- 나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,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(안 제7조의2)
- 다. 보칙에 있던 이용료, 교육과정 개설,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조항 등을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의 체계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평생교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(2) 입법예고(2018. 7. 12. ~ 7. 23.) 결과 : 의견 없음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
(3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별도 붙임

##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를 제4조의2로 하고, 제7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)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,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,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(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) 등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

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 징수·면제·환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,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9조제2항 후단 중 “서울특별시의회”를 “의회”로 한다.

제4장(제34조부터 제36조까지)을 삭제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2 (생략)</p> <p>제5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4조의3 (현행 제4조의2와 같음)</p> <p>제5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 경비의 관리는 「서울특별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 <p>제7조(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등) ① <u>시장은 은평학습장, 시민청 등 시에서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,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학습비(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말한다) 등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비의 징수·면제·환급 등에 관</u></p>

<신 설>

제7조 (생 략)

제19조(정관) ① (생 략)

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·④ 삭 제

제4장 보칙

제34조(이용료 등) ① 시장은 시에

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

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시

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개설, 학습비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의2 (현행 제7조와 같음)

제19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의  
회 -----  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
제35조(교육과정 개설 등) 시장은  
은평학습장, 시민청 등 시에서  
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 
과정,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 
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 
운영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36조(보조금 지원 및 정산) 평생  
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 
관리는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 
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<삭 제>

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되지  
않음

-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### 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학습비를 부과·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조항을 명시하고,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비 부과에 관련된 사항을 보칙에서 총칙으로 이동하여 조문체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본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이 되는 비용은 전혀 없으므로 위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### 4. 작성자

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정지혜(2133-3992)